

전주지방법원 2021. 5. 4 선고 2019가단20902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전주지방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나4492 판결

전주지방법원 2021. 5. 4 선고 2019가단20902 판결

전 문

원 고 A 유한회사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1. 4. 13.

판 결 선 고 2021. 5. 4.

주 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5지분에 관하여 2016. 7. 27.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5지분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부안등기소 2016. 7. 27. 접수 제1252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D 유한회사는 E 주식회사로부터 F 유한회사, G 주식회사, 주식회사 H에 전전 양도된 C에 대한 카드대금채권을 양수한 후 C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서울남부지방법원 2013차전30977호 양수금사건)하여 2013. 6. 22. ‘C는 D 유한회사에 82,736,740원 및 그 중 21,544,966원에 대하여 2013. 6.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C에게 송달되어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D 유한회사로부터 C에 대한 위 채권을 양수하였고 위 지급명령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승계집행문이 2015. 7. 6. C에게 송달되었다.

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80. 5. 12.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I이 2000. 6. 5. 사망하였는데, 사망 당시 그 상속인으로는 처 J, 자녀들로 장녀 C, 장남 피고, K, L, M, N가 있었다.

라. C와 피고를 비롯한 I의 상속인들은 2016. 7. 2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C의 지분을 포함한 전체 지분을 피고가 단독 소유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이하 ‘이 사건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고, 같은 날 피고 앞으로 2000. 6. 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C는 이 사건 분할 약정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2/15 지분 외에는 별다른 적극 재산이 없었으며, 이는 현재도 마찬가지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정읍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제척기간 도과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척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민법 제406조 제2항에 의하면,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법률행위 있는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어느 시점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있었는가를 따짐에 있어서는 당사자 사이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이를 판정하여야 하고,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언제 있었는가는 실제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날을 표준으로 판정할 것이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처분문서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를 중심으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를 판정할 수 있다.

2016. 7. 2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0. 6. 5.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갑 제8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2016. 7. 2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첨부한 서류에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상속인들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위 분할협의서의 작성 날짜가 '2016. 7. 27.로 기재되어 있고, 인감증명서의 발급일이 2016. 7. 19.부터 2016. 7. 27.까지 사이인 점, ② 1982. 4. 13. 제정된 대법원 등기예규 438호는 '재산상속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개시되므로, 상속재산을 협의에 의하여 분할하더라도 그것은 재산상속에 인한 소유권 이전이며, 따라서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등기원인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상속인인 I이 사망한 날을 등기원인일로 하여 2000. 6. 5.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C의 법률행위는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인 2000. 6. 5.이 아니라 실제로 그와 같은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2016. 7. 27.경'을 기준으로 판정하여야 한다. 원고는 위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5년 이내인 2020. 3. 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의 제척기간 도과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과 수익자 및 전득자의 악의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 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C는 별 다른 재산 없이 채무만 부담하는 무자력 상태에서 이 사건 분할약정을 하면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여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하게 하였는데, 위와 같은 이 사건 분할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고를 비롯한 C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되고, C는 이로 인하여 채권자들을 해할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는 C의 동생으로서 이 사건 분할약정이 사해행위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나. 종중재산이라는 주장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조부인 O가 살던 곳인데 O가 사망한 후 O의 후손들이 이를 O의 제사에 봉사하고 묘소를 관리하는 위토로서 사용하기로 하여 O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의 재산이 되었고, 위 종중으로부터 O의 장남인 피고 등의 아버지 I에게 명의신탁되었다가 I이 사망하자 다시 피고에게 명의신탁된 것일 뿐 C가 상속받을 재산이 아니어서 이 사건 분할약정은 사해행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주장하는 종중이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고 보기도 어렵거니와, 설령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위 종중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의신탁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이 사건 분할약정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2/15지분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부안등기소 2016. 7. 27. 접수 제1252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은영

별 지 목 록

[토지]

1. 전라북도 부안군 대 688㎡

[건물]

전라북도 부안군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

85.08㎡